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1978. 3. 1. 제정

2020. 1.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및 편입학

제2조(학부·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학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과 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편입학) ①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을 인정할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편입학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허용한다. (개정 1998.1.5.)

③ 학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편입학은 제2학년과 제3학년에 허용한다.

④ 편입학 전형의 방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모집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3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결정

제4조(전공 결정시기) ① 학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결정시기는 제1학년말 또는 제2학년말 중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5.)

② 학부별로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시 전공을 결정한다.

③ 2개 이상의 통합된 모집단위 또는 대학/학부 등으로 입학한 후에 학과/전공을 결정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6., 2017.8.16.)

④ 제3항의 2개 이상의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전공을 결정하기 전에는 호크마교양대학에 소속된다. (신설 2018.2.7.)

제5조(전공의 결정절차) ①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이 전공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결정 승인신청서를 지도교수, 부학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② 삭제 (2015.9.18.)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공의

결정을 승인한다.

1. 신청학생의 희망
2. 학교의 시설과 자원
3. 사회의 필요
4. 재학중 이수교과목과 성적 (개정 1997.3.7.)
5.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조건
6. 기타 전공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교과과정

제6조(교양과목의 구성) ①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 교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2.23., 2015.12.29., 2019.10.17.)

② 기초교양은 이화진선미, 사고와표현, 글로벌의사소통,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2.31., 2015.12.29., 2017.2.8., 2019.10.17.)

③ 핵심교양은 융복합교양, 큐브, 창의와도전 영역으로 구분하며, 융복합교양은 '문학과언어', '예술과표현',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과학과기술'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큐브는 '인문학큐브', '콘텐츠큐브', '디자인큐브' 세부 영역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12.29., 개정 2019.10.17.)

④ 일반교양은 자유선택, 미래설계 영역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10.17.)

제7조(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교양과목 취득학점) ① 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의 전공과목, 교양과목의 졸업이수학점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하며,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학칙 제48조제6항을 따르되, 스크랜튼학부의 기초교양의 이수학점은 제1전공의 기초교양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2016.2.26., 2016.3.31., 2017.2.8., 2017.8.16., 2018.2.7., 2019.3.12., 2019.10.17.)

② 삭제 (2012.2.29.)

③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목개정 2015.12.29.]

제8조(기초교양의 학점취득) ① 이화진선미 영역은 '기독교와세계'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나눔과공존의리더십'은 각 대학별로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2019.10.17.)

② 사고와표현 영역은 '통합적사고와글쓰기'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은 '논리적사고와글쓰기'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고,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학생은 '사고력과글쓰기'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개정 2016.9.9., 2019.10.17.)

③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의 과목은 'College English', 'Advanced English', 제2외국어 중 각 대학별로 최소 1과목(3학점)에서 최대 3과목(9학점)까지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6.9.9., 2019.10.17.)

④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의 과목 중에서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개정 2016.9.9., 2019.10.17.)

⑤ 삭제 (2019.10.17.)

⑥ 삭제 (2019.10.17.)

⑦ 삭제 (2019.10.17.)

⑧ 삭제 (2019.10.17.)

⑨ 삭제 (2019.10.17.)

⑩ 삭제 (2019.10.17.)

[전문개정 2015.12.29.]

[제목개정 2019.10.17.]

제8조의2(핵심교양의 학점취득) ① 융복합교양 영역은 5개 세부 영역 중 4개 세부 영역을 선택하여 4과목(12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다만, 엘텍공과대학 사이버보안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학생은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며,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은 3개 세부 영역을 선택하여 3과목(9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② 본교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은 융복합교양 영역을 세부 영역의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대학별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큐브 영역은 엘텍공과대학 사이버보안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학생에 한하여 각 세부 영역별 1과목(3학점)씩 3과목(9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8조의3(약학대학 교양과목 학점취득) 약학대학 학생은 '기독교와세계'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8조의4(인문학 관련 교양의 학점취득) 학생(약학대학 학생 포함)은 인문학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8조의5(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양과목 학점취득)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양과목 학점취득은 제1전공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7.]

제9조(과목의 설정과 개설) ① 교양과목의 설정은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크마교양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4., 2016.2.26., 2017.8.16.)

② 삭제 (2000.2.1.)

③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의 설정은 해당 학부, 학과 또는 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5., 2015.12.29., 2017.8.16.)

④ 과목의 개설은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8.16.)

제10조(교과과정의 적용) ① 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② 입학하여(편입학 제외)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후 복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일반학생의 입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한 학년도의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1.4.15.)

④ 재학중 전과를 하거나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전입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해당 학생의 입학당시 교과과정)을 적용받는다.

제11조(교과과정 적용의 특례) ① 교과과정 개정에 의해 필수과목이 변경되었거나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 개정 이전 입학생에게도 해당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교과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를 개정 교과과정의 해당영역(교양, 전공, 교직 등)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2조(편입학한 학생의 교과과정 및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 ① 편입학한 학생은 제7조 제1항의 해당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학과 또는 전공의 요청에 따라 이수 학점수를 경감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중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을 인정하거나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에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 학점인정의 범위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6. 6.28., 2015.9.18., 2015.12.29., 2018.5.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시 필요한 학점은 모두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할 경우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7., 2018.5.8.)

④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교무처장의 제청에 따라 교양과목과 기타과목학점의 일부를,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본교에서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⑤ 편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훈련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학교에서 훈련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교목실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전적학교 학점인정 또는 본교취득면제 및 제5항의 훈련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8.)
- ⑦ 제1항 단서의 이수학점 경감, 제2항 및 제4항의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 (건축학전공은 5분의 3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과, 약학과 및 산업제약학과로 편입한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모두를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5.8.)
- ⑧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전공과목의 이수 인정 또는 면제 학점의 총수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건축학전공은 5분의 2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28., 2015.12.29., 2018.5.8.)
- ⑨ 학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편입학(이하 “학사편입학”이라 한다)한 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편입학 학생이 교과과정상 잔여 수업연한 이내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 인정은 편입학한 첫 학기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16.6.16., 2018.5.8.)
- ⑩ 제2항 및 제4항의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과목의 성적이 C 이상이어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18., 2018.5.8.)

제5장 전과 및 전공 변경

제13조(전과 시기 등) 학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과에 관한 그 실시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부 내에서의 전공변경시기) ① 학부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결정한 학생이 동일 학부 내에서의 전공을 변경(이하 “전공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학년말과 제3학년말에 2회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학과별로 입학한 후 전공을 정한 학생이 전공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전과 및 전공변경 허가범위와 절차) ① 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가대상과 인원은 매 학년도말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8.)

② 삭제 (1999.3.8.)

③ 전과 및 전공변경의 허가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8.)

제6장 휴학, 제적 및 유급

제16조(휴학)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은 학칙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2.2.14.)

제18조(재입학자의 취득학점인정)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 또는 자퇴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7.8.16.)

제19조(유급) ①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5., 2015.12.29.)

1. 수강교과목 중 1과목 이상 F 또는 U를 취득

2.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70 미만

② 제1항에 의하여 유급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된 학기의 전공교과목 중 C+ 이하 또는 U를 취득한 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진급을 인정한다. (개정 2015.9.18.,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제7장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심화전공

(개정 2008.2.29., 2015.9.18., 2016.3.31.)

제20조(부전공 이수절차 및 취득학점) ① 학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이수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부전공 이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2.1.)

② 부전공이수의 승인을 얻은 학생이 그 취소를 원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2.1.)

③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 또는 학과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 전공교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전공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는 이중 6학점까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④ 부전공이수 및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21조(복수전공 이수절차) ① 학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2학년 제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복수전공이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2.1., 2016.3.31., 2017.4.6.)

②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 및 의학과와 기타 법령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0.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이 사범계열 각 학과인 학생 및 비사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한다. 다만, 초등교육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0.2.1., 2015.9.18.)

④ 복수전공이수를 승인받은 학생이 그 취소를 원할 때에는 복수전공취소신청을 하여 총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2.1.)

⑤ 복수전공 이수 및 취소 신청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22조(복수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 복수전공이수자는 제7조의 제2전공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의 소요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5.12.29.)

② 동일한 대학 또는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과목과 동일하면 복수전공의 전공기초과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5.12.29., 2018.2.7.)

③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과목 또는 전공과목이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의 일부 전공기초과목 또는 전공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9학점까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6.6.28. 2015.9.18., 2015.12.29.)

④ 삭제 (2015.9.18.)

⑤ 복수전공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때에는 복수전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복수전공 학생이 제1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소요취득학점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심화전공 이수 등) ① 학칙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화전공을 두고 있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의 학생은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화전공을 두고 있지 않는 학과 또는 전공 소속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심화전공 이수 등과 관련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22조의3(연계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취득학점 이외에 연계전공별 추가 이수요건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연계전공의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그 범위는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18.]

제22조의4(융합전공이수자의 취득학점 등) ①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전공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취득학점 이외에 추가 이수요건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이 주전공의 전공기초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그 범위는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31.]

제8장 계절학기, 수강신청,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특례

제23조(계절학기의 개설) ① 학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계절학기에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일자, 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8.1.5.)

제25조(계절학기 수강생의 평점)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학기의 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누계평점 산정에는 포함한다.

제26조(교과목 수강신청) ①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강의시간 표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② 삭제 (2000.2.1.)

③ 수업연한 내에 있거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남아있는 학기에는 최소 1학점 이상의 1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제27조(수강신청의 변경) ①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0.2.1.)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학기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의 철회는 학기개시 후 5주일 이내의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4., 2015.12.29.)

③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2.1.)

④ 수강신청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2.1.)

제28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취득학점 제한) 학칙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학점수는 3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7.)

제29조(재수강) 재수강하고 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하고 학업성적부에 'R'(Repeated Course) 표시와 재수강 학년도와 학기를 기재한다.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은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16.)

제30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특례) ① 학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

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 2000.2.1.)

1.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개정 2001.9.24.)
 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학기(계절학기, 해외유학교환학생기간은 제외한다)까지의 평균성적이 3.30 이상인 자 (개정 2004.8.30.)
- ② 제1항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8.30.)

제31조 삭제 (2000.2.1.)

제32조(석사학위과정 수강 특례 교과목의 성적 등)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수강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성적을 학업성적부에 기록하고 수강 교과목명 다음에 “(대학원)”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개정 2017.8.16.)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수강신청서에 수강하는 석사학위과정 교과목명을 기재하고, 해당 교과목을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3.8.)

③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중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킨 교과목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한다. 다만, 이수하는 전공 또는 학과가 지정하지 아니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타과목 학점으로 한다.

제32조의2(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칙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과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2.25., 2016.9.9.)

1. 조기졸업과정: 제6학기(건축학 전공은 제8학기) 이상 등록하여 정해진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3.3 이상인 자 (개정 2018.2.7.)
2. 정규졸업과정: 제7학기(건축학 전공은 제9학기, 6년제 약학대학 각 학과는 제11학기) 이상 등록하여 정해진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

②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18.)

1. 학칙 소정의 과정 이수

2. 총 평균성적 (개정 2016.9.9.)

가. 조기졸업과정: 총 평균성적 3.3 이상

나. 정규졸업과정: 총 평균성적 3.0 이상

③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9.)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선발인원 및 기준,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 또는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2015.9.18., 2016.9.9.)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등록절차,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5., 2015.9.18., 2016.9.9.)

[본조신설 2001.9.24.]

제32조의3(인증제 과정) ① 학칙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제 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인증제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중도에 인증제 과정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인증제 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제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8.]

제33조(학점취득의 특례) ① 학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 교양과목의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호크마교양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여 총장이 정하며, 전공기초과목의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대학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제청하여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8.16.)

③ 교양과목의 특별시험은 호크마교양대학에서 실시하며, 전공기초과목의 특별시험은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내 특별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0.2.1., 2017.8.16.)

④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 총계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1999.3.8.)

⑤ 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 학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공고에는 특별시험의 시행일자 및 방법·수험료·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⑦ 삭제 (1999.3.8.)

제9장 성적

제34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성적평가 방법과 학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급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교수자율평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자율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4.]

제35조(초과취득학점의 처리) 학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취득학점을 무효로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그 교과목을 지정하게 한다. (개정 2012.5.17.)

제36조(성적정정)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팀에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참고물)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매학기 성적제

출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6., 2015.9.18.)

② 제1항의 성적정정은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6조의2 삭제 (2014.4.7.)

제10장 수료 및 졸업

제37조(조기졸업제) 학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제는 모든 학과에 적용한다. 다만, 재학기간 중 과목 낙제한 학생,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6.)

제38조(학년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 ①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22., 2015.12.29., 2016.2.26., 2017.2.8., 2018.2.7., 2019.3.12., 2019.10.17.)

② 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대학별 입학생,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제1전공의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9.2.23., 2016.2.26.)

④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학칙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수료로 처리한다. (신설 2015.2.6.)

제39조(졸업에 필요한 학점특례) 학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엘텍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식품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제외) 138학점 (개정 2017.2.8., 2019.3.12., 2019.10.17.)
2. 엘텍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139학점 (개정 2017.2.8., 2019.3.12.)
- 2의2. 엘텍공과대학 식품공학전공 137학점 (신설 2019.10.17.)
3. 엘텍공과대학 건축학전공 154학점 (개정 2017.2.8., 2019.10.17.)
4. 음악대학(무용과 제외) 135학점 (개정 2017.2.8.)
5. 음악대학 무용과 132학점
6. 조형예술대학 135학점
7.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제외) 135학점
8.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140학점
9. 경영대학 130학점
10.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130학점
11.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135학점
12.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 체육과학부 132학점 (개정 2019.10.17.)
13. 의과대학 170학점 (개정 2017.2.8.)

14. 간호대학 135학점

15. 약학대학 157학점

[전문개정 2016.2.26.]

제39조의2(훈련학점) 학칙 제48조 제3항의 훈련학점은 8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1. 의예과 및 의학과 의 경우 4학점 (개정 2015.12.29.)
2. 학칙 제47조의3에 의한 조기이수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일반학기수와 동일한 수의 학점
3.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생의 경우에는 잔여수업연한의 일반학기와 동일한 수의 학점
4. 의학과, 약학과 및 산업제약학과로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4학점 (개정 2015.12.29.)

제40조(우등) ①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과목 낙제 없이 3.75이상인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한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제33조에 의하여 특별로 취득한 학점은 우등생 인정학점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1.)

② 재학기간중 과목 낙제한 일이 없는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재학기간 전학년을 통하여 누계 평균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은 우등졸업생으로 4.0이상인 학생은 최우등졸업생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의학과, 약학과 및 산업제약학과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제40조의2(한국어 능력 인증) ① 학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 한국어 능력을 인증받아야 한다. 다만, 입학 시 영어 능력을 검증받아 선발되고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부(전공)과정의 입학생은 한국어 능력 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어 능력 인증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원본을 매 학기 종강일까지 국제처 국제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학생팀은 매 학기 종강일까지 졸업인증처 리를 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로 통보한다.

③ 졸업 전까지 한국어 능력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1.21.]

제11장 학점등록 및 납입금

제41조(학점등록) ① 학칙 제23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08.5.28., 2015.9.18.)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과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비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제12장 학생활동

제42조(학생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 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은 당해 단체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회칙의 제정 및 개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이외의 학생단체(동아리를 포함한다)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별로 학생처 또는 당해 대학 행정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제43조(학생단체 등의 지도) ① 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등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7.)

② 제1항의 지도위원회는 중앙지도위원회와 각 대학 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1.5.)

③ 중앙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학생처장·교목실장·학생처부처장 및 대학(원)장 중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사는 학생처부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소속한 대학의 학장, 부학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5., 2014.9.26.)

④ 대학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학장·부학장 및 학장이 해당 대학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간사는 부학장이 된다. (신설 1998.1.5., 2014.9.26.)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소·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주관 기관의 허락을 받은 후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학생처 또는 해당 대학의 행정실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생처장 또는 대학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도 같다. (개정 1998.1.5., 2014.9.26.)

1. 교내외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인쇄물·영상자료의 첨부·배포 또는 상영

3. 교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학생활동의 후원을 요청하거나 시상을 의뢰하는 행위

4. 교외 인사의 학내 초청

⑥ 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1.5.)

1. 입후보 당시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 임기 개시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개정 2006.12.11.)

제44조(간행물) ①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언론 출판의 일반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거쳐 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제13장 삭제 (2006.1.19.)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5조 삭제 (2006.1.19.)

부칙 (1978.3.1. 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별표]의 전공과목, 부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소요취득학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197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79.11.20. 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의 전공·부전공·복수전공의 선택시기에 관한 규정과 [별표]의 전공과목 소요취득학점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197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1.6.17. 개정)

이 세칙은 198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8.20. 개정)

이 세칙은 198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20. 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198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2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5.11. 개정)

이 세칙은 198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4.14. 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삭제 (1985.9.10.)

부칙 (1985.9.10. 개정)

이 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2.18. 개정)

이 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3.5. 개정)

이 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6.12. 개정)

이 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6.16. 개정)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3.31. 개정)

이 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2.24.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6.20.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4.10.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생물학과, 교육학과의 교육학전공, 유아교육전공, 초등교육전공 및 과학교육의 수학전공 재적생은 이 세칙에 의하여 각각 생물과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및 수학교육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1992.3.16. 개정)

이 세칙은 199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8.19. 개정)

이 세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 개정)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25.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이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2. 개정)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4. 개정)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30. 개정)

이 세칙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14. 전문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제10조 제2항 대상제외)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학생이 1999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제2전공에 대하여서는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2항을 적용받는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 전공교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이 개정 세칙에서 통합된 학부의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하여 이 개정 세칙 시행 당시 제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당시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7.3.7.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23.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5.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제10조 제2항 대상 제외)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2001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제2전공에 대하여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에 이 개정세칙에서 통합된 학부의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하여 이 세칙 시행 당시 제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당시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6.1. 개정)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8.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1998학년도 이전에 이 개정세칙에서 통합된 학부의 각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하여 이 세칙 시행 당시 제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입학 당시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1.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4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제40조 제2항은 1999학년도 후기졸업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1996년 5월 14일의 개정학칙시행세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학칙시행세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양필수 과목 학점을 제외하고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2003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경우에 제2전공에 대하여는 이 세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6.20.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6.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4.6.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4.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2.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2.14.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7. 개정)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0. 개정)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1.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1.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30.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1. 개정)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4.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8.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9. 개정)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8.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9. 개정)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1. 개정)

이 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8. 개정)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별표 2]와 관련하여 2007학년도 예술대학 입학생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은 48학점으로 하되, 의류학과 입학생의 복수전공 이수시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부칙 (2008.5.28. 개정)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19.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23.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② (경과조치) 제7조 [별표 2]와 관련하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의 심화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2008학년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2.11. 개정)

이 세칙은 201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제적생에게는 종전 세칙이 적용된다.

부칙 (2011.4.15.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7조 제1항 [별표 2]와 관련하여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에 관한 사항은 2010학년도 건강과학대학 입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2. 2008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2.29. 개정)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7.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35조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개정)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5. 개정)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0.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6항 및 제7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7.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전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4.5.15.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별표 2, 제38조제1항 별표 3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 2, 제8조, 제38조 별표 3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6. 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37조 및 제40조제2항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해당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5.6.22.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8.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6.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1. 개정)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9. 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2017.8.16. 개정)

부칙 (2016.6.1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9.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8. 개정)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1항 별표 2 및 제38조 제1항 별표 3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이후 의학과에 진입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2017.4.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7.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별표2, 제38조제1항 별표3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8.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2.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엘텍공과대학 전공필수해지에 따른 제7조제1항 별표2, 제38조제1항 별표3, 제39조 개정 내용은 엘텍공과대학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4.4.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7. 개정)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 개정)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는 2020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편입학생의 경우 2022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은 학칙 [별표 1]과 같다.

[별표 2](개정 2015.6.22., 2015.12.29., 2016.2.26., 2016.3.31., 2017.2.8., 2017.8.16., 2018.2.7., 2019.3.12., 2019.10.17.)

전공과목·전공기초과목 및 교양과목 취득학점(제7조 관련) (2020학년도)

대 학	학부·학과·전공	졸업에 필요한 학점	교양과목 학점						전공기초과목·전공과목 학점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전공 시 이수학점		(복수)전공 시 이수학점	
			이화 진선미	사고와 표현	글로벌 의사소통	컴퓨팅과 수리적 사고	융복합 교양	큐브	전공 기초	최소 전공	전공 기초	최소 전공
인문과학대학	각 학과·영어영문학부	129	3	3	6	3	12	-	-	63	-	42
사회과학대학	각 학과·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129	3	3	3	3	12	-	-	48	-	39
자연과학대학	각 학과·화학생명분자과학부	129	3	3	3	3	12	-	12	48	12	33
엘텍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139	3	3	6	3	12	-	29	63	29	51
	사이버보안전공	139	3	3	6	3	3	9	31	54	31	48
	전자전기공학전공	138	3	3	6	3	12	-	-	-	30	62
	식품공학전공	137	3	3	6	3	12	-	-	-	29	62
	화학신소재공학전공	138	3	3	6	3	12	-	-	-	32	62
	건축학전공	154	3	3	6	3	12	-	-	-	15	111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138	3	3	6	3	12	-	-	-	36	66
	환경공학전공	138	3	3	6	3	12	-	-	-	29	62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138	3	3	6	3	3	9	-	-	27	60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138	3	3	6	3	3	9	-	-	27	51	
음악대학	건반악기과·관현악과·성악과·작곡과	135	3	3	3	3	12	-	-	-	24	48
	한국음악과	135	3	3	3	3	12	-	-	-	20	48
	무용과	132	3	3	3	3	12	-	-	-	-	54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섬유·패션학부	135	3	3	3	3	12	-	12	57	12	45
	디자인학부	135	3	3	3	3	12	-	18	57	18	45
사범대학	교육학·유아교육· 영어교육·사회과교육과	135	3	3	6	3	12	-	-	-	22	51
	초등교육과	135	3	3	6	3	12	-	23	66	23	54
	교육공학과	135	3	3	6	3	12	-	22	60	22	51
	특수교육과	135	3	3	6	3	12	-	-	-	22	42
	국어교육과	135	3	3	6	3	12	-	22	60	22	51
	과학교육과	140	3	3	6	3	12	-	-	-	22	51
	수학교육과	135	3	3	6	3	12	-	-	-	22	51
경영대학	경영학부	130	3	3	3	3	12	-	3	63	3	49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130	3	3	3	3	12	-	-	60	-	42
	의류산업학과	135	3	3	3	3	12	-	-	66	-	54
	국제사무학과	129	3	3	3	3	12	-	-	63	-	48
	식품영양학과	132	3	3	3	3	12	-	-	60	-	45
	융합보건학과	132	3	3	3	3	12	-	-	63	-	54
	체육과학부	132	3	3	3	3	12	-	-	60	-	45
의과대학	의예과	72	6	3	3	3	9	-	-	-	-	34
	의학과	170	-	-	-	-	-	-	-	-	-	170
간호대학	간호학부	135	6	3	3	3	12	-	-	-	17.5	80.5
약학대학	약학과	157	3	-	-	-	-	-	-	-	-	154

(계속)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대 학	학부·학과·전공	졸업에 필요한 학점계	교양과목 학점						전공기초과목·전공과목 학점			
			기초교양				핵심교양		심화전공 시 이수학점		(복수)전공 시 이수학점	
			이화 진선미	사고와 표현	글로벌 의사소통	컴퓨터 수리적 사고	융복합 교양	큐브	전공 기초	최소 전공	전공 기초	최소 전공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	3	3	6	3	-	-	-	-	6	30
	융합학부	129	3	3	6	3	12	-	9	48	9	33
	국제학부	129	3	3	6	3	12	-	9	48	9	39

* (복수)전공 시 전공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학과(또는 전공)를 복수전공하는 주전공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학점
2. 타학과(또는 전공)생이 해당 학과(또는 전공)를 복수전공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학점

*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계, 교양과목 중 핵심교양과목 학점, 전공기초과목·전공과목 학점은 제1전공 학점과 동일함. 별표 2의 스크랜튼학부 (복수)전공 시 전공 이수 학점은 스크랜튼학부에서 관장하는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 이수 해야 하는 학점임

* 별표 2의 의과대학 의예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계, 교양과목학점, 전공과목 학점은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임

[별표 3] (개정 2015.6.22., 2015.12.29., 2016.2.26., 2017.2.8., 2018.2.7., 2019.3.12., 2019.10.17.)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제38조 관련) (2020학년도)

구 분	1학년 수료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4학년 수료	5학년 수료	6학년 수료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스크랜튼대학 융합학부, 국제학부	32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129학점 이상	-	-
엘텍공과대학(컴퓨터공학 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식품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제외)	34학점 이상	69학점 이상	103학점 이상	138학점 이상	-	-
엘텍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34학점 이상	69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139학점 이상		
엘텍공과대학 식품공학전공	34학점 이상	68학점 이상	102학점 이상	137학점 이상	-	-
엘텍공과대학 건축학전공	30학점 이상	61학점 이상	92학점 이상	123학점 이상	154학점 이상	-
음악대학(무용과 제외)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음악대학 무용과	33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	-
조형예술대학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제외)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	-
경영대학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32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7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 체육과학부	33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	-
의과대학 의예과	36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	-	-	-
의과대학 의학과	42학점 이상	85학점 이상	127학점 이상	170학점 이상	-	-
간호대학	33학점 이상	67학점 이상	101학점 이상	135학점 이상	-	-
약학대학	-	-	39학점 이상	78학점 이상	117학점 이상	157학점 이상
이수학기기준	2학기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상	8학기 이상	10학기 이상	12학기 이상

* 대학별 입학생, 스크랜튼학부 학생의 각 학년 수료자의 자격인정기준은 제1전공의 자격인정 기준으로 한다.

- * 전공(학과)미결정자의 각 학년 수료자격 인정기준은 선택 가능한 전공(학과)의 학년 수료학점이 다른 경우, 학년 수료학점 중 최소 학점으로 한다.

(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 ○ 대 학 학장 ○ ○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